특집논문

토의민주주의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동일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 영 재*

이 논문은 신귀족층 중심의 현대 엘리트 민주주의 비판으로부터 시작한다. 현대 민주주의가 '선거'와 '다수결'이라는 대표 선출의 형식 요건에만 치중함으로써 동의 원리의 극단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 논문은 토의 민주주의 원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복원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민주적 원리와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두 가지로 철인지배와 다수결정 원리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민주적 동일성 원리에 대한 의미 축소 및 동종성 원리로의 왜곡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최근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토의 원리는 이론적 맥락을 넘어 정치적 제도화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토의 민주주의의 동일성 원리는 대의제 원리의 한계에 민주적 가능성을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주제어 : 토의, 민주주의, 동일성, 엘리트, 다수결, 선거

* 동국대학교

www.kci.go.kr

1. 문제제기

민주주의는 정치권력의 정당화와 직결된 화두이다. 민주주의 테제의 포섭력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역대 한국 정권만 보더라도 충분히 입증된다. 3·15 부정선거로 막을 내린 이승만 정권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자유)민주주의였다. 심지어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정권도 변형된 형태[1]로나마 민주주의를 표방해야 했다. 철인-세습통치의 폐쇄적 정치체제인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국민이 '헌법제정권력'이라는 말이다(시에예스). "Q.O.T"원칙이 근대 혁명의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로 반영되었다. "Q.O.T"원칙이란 로마에 기원을 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는 원칙을 말한다(Manin 1997, 87).

근대 정치는 이 동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 공직을 선출하였다. 결과는 새로운 정치적 엘리트, 즉 신귀족층의 정치적 지배로 나타났다. 이 당사자-대표자의 딜레마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대의제 하에서 소수의 차이집단(또는 다수결의 패자-인용자)은 영원한 차이의 낙인을 받고서 중심의 외곽을 맴돌 뿐이다. 이들에게 '1인 1표'는 소수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감옥에 영원

1) "서구적 민주주의가 아닌 즉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가 '행정적 민주주의(Administrative democracy)'라고 할 수 있다(박정희 1961, 229)."

www.kci.go.kr

히 묶어 두는 주술에 지나지 않는다(이남석 2001, 44).”

서강대 동아연구소가 2005년 11월 전국의 1,200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이상과 현실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한 질문에 ‘법의 제정’ 16.3%, ‘국민의사 대표’ 65.8%, ‘행정부 감독’ 10.7%, ‘지역구 봉사’ 7.0%라는 답이 나왔다(이갑윤・이현우 2009, 23).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는 민주주의 원리에 정확히 부합한다. 국민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역할수행>에 대한 질문의 답은 국회가 이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가 잘하고 있다’ 0.8%, ‘잘하고 있는 편이다’ 3.3%, ‘그냥 그렇다’ 36.3%, ‘못하고 있는 편이다’ 38.5%, ‘못하고 있다’ 21.1%라는 답이 나왔다(이갑윤・이현우 2009, 19-20). ‘잘한다’는 응답은 고작 4.1%였고, ‘그냥 그렇거나 못한다’는 응답이 무려 95.9%였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를 너무 간단히 ‘선거’(투표)로 등치시켜 왔다. 민주주의가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확증해주는 최선의 ‘통치’ 슬로건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정치현실은 신귀족층의 과두지배 원리로 귀결되고 있다.[2]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분기하는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대한 성찰을 추동한다. 그동안의 주된 이론적 논쟁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에서 전개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대의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직접민주주의 원리가 대안으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합리적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나 공공선을 선험적으로 전제하는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은 평행선을 달렸을 뿐 민주적 정당성의 명료성을 증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의제

[2] 우리나라 18대 국회의원의 출신 직업을 살펴보면, 사회적 엘리트 그룹인 법조계, 정당인, 공무원, 언론인, 교수(사), 의사 출신이 전체의 74.8%를 구성하고 있다(「한국일보」 2009. 11. 2).

www.kci.go.kr

의 한계를 직접 민주주의로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민주적 정당성 복원의 긍정적 가능성을 토의(deliberative)[3] 민주주의에서 구하고자 한다. 토의 민주주의의 출발은 '경쟁', '이익', '투표' 중심의 민주주의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Bohman&Regh 1997, xii). 1970년대 '참여', '민주적 정당성',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구체적 단초였다.[4] 토의 민주주의는 1980년 미국의 헌법학자 버셋에 의해 정식화 되었다(Bessette 1980). 버셋은 초기 경제적, 다원주의적 모델이 취한 정치관, 즉 정치를 경쟁하는 이해들의 갈등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였다. 버셋이 토의 민주주의의 개념 정립에 기여했다면, 1980년대 중반 토의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는 마넹(Manin)의 역할이 중요했다.[5] 마넹은 '정치적 토의(political deliberation)'를 중심으로 개인의 자율성과 시민적 참여를 통한 공익의 실현에 주목하였다. 코헨(Cohen)은 1989년 토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공공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Cohen 1989).

1990년대는 '토의적 전환기(deliberative turn)'라 할 만큼 토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지평이 확대되었다(Dryzek 2000, 1). 롤즈(Rawls)와 하버마

---

3) Deliberation은 '심의'(審議), '토론'(討論), '토의'(討議), '숙의'(熟議) 또는 '협의'(協議)와 같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심의'는 정책결정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의 의미가 강하고, '숙의'의 경우 해결 곤란한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토의'에 비해 소통적 원리와 다소 거리가 있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Deliberation이 계속적인 토론(debate)의 의미와는 달리 과정적 차원 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토의'로 옮기는 것이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Deliberation이 갖는 상호성, 소통성 등에 대한 강조차원에서 '토의'로 하였다. 단, 국역본의 인용에서는 '심의'와 같은 기존 역어를 존중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인용자 표시를 달아 두었다.

4) 이에 대해서는 Pateman 1970; Rawls 1971; Habermas 1975; Macpherson 197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마넹이 1985년에 "Volontè Gènèrale ou Dèliberation? Esquisse d'une Theorie de la Dèliberation Politique"라는 제목으로 *Le Dèbat*에 발표한 논문은 1987년 Elly Stein & Jane Mansbridge의 번역으로 *Political Theory*에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www.kci.go.kr

스(Habermas)가 중요한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롤즈는 개인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 틀을 대폭 수정하여 공적이성을 중심으로 다원주의 사회의 정의론을 제시하고 토의의 중요성에 착목하였다. 하버마스는 집합적 결정이나 공동의 이해도달을 위한 상호토론을 강조하고, '토의정치'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후반까지의 연구가 토의 민주주의의 정치이론적 가능성 탐구에 주력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현실 정치와 토의원리를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2000년대부터 펑(Fung), 피쉬킨(Fishikin), 구딘(Goodin), 드라이젝(Dryzek), 쳄벌스(Chambers), 데이비스(Davies) 등의 학자들이 토의 모델의 현실 접목을 통한 제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의 민주주의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추상성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면 민주주의의 정당성 원리는 '동일성'의 원리와 '동의'의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 민주제의 작동 이후 '동의' 원리에 기반한 '선거' 민주주의의 한계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 및 교정이 '동일성'의 원리로 상당부분 가능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토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동일성의 원리를 접목할 수 있는 유력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 글은 총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동일성의 원리에서 동의의 원리로의 전환이 갖는 맥락 및 의미에 대하여, 제3장은 동의의 원리가 직면한 한계, 즉 엘리트 지배 원리에 대한 민주주의 관점의 비판을, 제4장은 동일성 원리의 두 가지 왜곡을 규모의 문제, 동종성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토의 민주주의의 민주적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다.

www.kci.go.kr

2. 민주적 정당성 원리의 변화와 의미

1) 민주주의와 인민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는 아테네의 몰락과 함께 사적인 이익에 매몰된 민중의 폭정을 의미하였다.[6] 이처럼 민중 일방에 의한 이익추구 원리로 천대 받던 민주주의가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한 것은 로마 공화주의에서였다. 다만 그 역할은 '지배'의 원리[7]로서가 아니라 '견제'의 역할로써였다. 로마 공화주의에서 민주제는 군주제, 귀족제 원리에 대한 견제 및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한 축이었다. 그 후 근대 이전까지 민주주의는 신분과 혈통에 의한 천상의 지배에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근대 혁명에서 부활한 민주주의의 정당성 원천은 '인민'이었다. 인민이 권력의 원천, 즉 주권자임이 주창되었다. 인민은 혈통이나 신분, 종교적 원리를 대체하는 지위를 부여 받았다. "'인민'이란 정치체의 집단적 구성원이며 주권의 권위를 담지하는 주체이다(Rousseau 1968, 102)." 사회계약을 통해 루소는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집합적 힘(collective force)을 통하여 방어할 수 있는 결사(association)의 형식을 발견"할 것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자기 자신 밖에는 복종하지 않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것"을 주장한다(Rousseau 1968, 60). 주권은 오직 전체의사의

---

6) 아테네가 해상 제국으로 변화하면서부터 전체 인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정치를 뜻하는 '데모스'라는 말이 일부 분파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를 하는 민중을 뜻하는 용어로 바뀌게 된다. 데모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하층 시민들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런 지배를 데모크라티아, 즉 중우정(衆愚政)으로 부르게 되었다(김경희 2009, 35).

7)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는 *Demos*(인민 · 민중)와 *Kratia*(권력 · 지배)의 합성어로, 인민에 의한 '지배' 원리를 뜻한다.

www.kci.go.kr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 없고, 또 주권자는 오직 집합적 존재이므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Rousseau 1968, 70).

프랑스 혁명을 통해 국민의회 창설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에예스(Sieyès)도 성직자와 귀족이 아닌 '인민'(국민)이 모든 것의 기원임을 역설하였다. "국민의 의사는 항상 적법하며, 국민의 의사가 곧 법률이다. 국민의 의사 이전에 그리고 그 상부에는 자연법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종류의 대표된 권력도 대표의 조건을 결코 변경할 수 없다. 입법부를 확립하는 헌법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제정된다(시에예스 2003, 93-94)."

그러나 근대 정치권력의 근거로서 '인민'은 현실 정치에서 정치적 지배자의 승인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한정되었다. 정치적 지배는 부르주아(엘리트)의 지배로 자리 잡았고, 민주주의는 평등의 원리로부터 멀어져 갔다.[8] 경제적 평등은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의 몫이 되었고, 민주주의는 '동의'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유주의와 접목되었다. 평등한 지배 즉, 권력의 배분적 정의가 민주주의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동일성의 원리에 기반한 인민주권 원리, 즉 자기-지배의 원리로부터 동의의 원리, 즉 승인의 원리로 전환되었다. '선거'가 이 동의의 원리를 민주적 제도로 확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동의의 정당성은 인민의 일치된 의견과 견제, 감시로부터 도출되었으나 인민의 일치된 견해, 즉 만장일치(unanimity)는 정치적 필요에 의

8) 로제베르크는『민주주의와 사회주의(*Democracy and Socialism*)』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조명한 바 있다. 18세기말 당시 민주주의는 빈궁한 프랑스 인민의 봉기였고, 사회주의자와 민주주의자는 '평등'의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가 관철됨과 동시에 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 즉 소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www.kci.go.kr

해 다수결(majority) 원리로 치환되었고, 다수결 원리가 현대 민주정치에서 지배적인 '민주적'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선거가 갖는 제도적 속성에 대해 베버(Weber)는 다음과 같이 갈파한 바 있다.

> 이것은(민주주의 -인용자) 단순히 지도자에 의한 안내에 대해 그 댓가(the price)를 지불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당-인용자) 장치(machine)를 갖는 지도적(leadership) 민주주의와 지도부재(leaderless) 민주주의에 대한 선택, 다시 말해 소명의식 없고, 지도자로서의 내적 카리스마가 없는 직업적 정치가들의 지배 사이에서 선택일 뿐이다(Weber 1977, 113).

근대 민주주의 확립 이후 인민은 엘리트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역할로만 그 권한을 제한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 동일성의 원리에서 동의의 원리로

정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는 주체와 타자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 주체와 타자는 곧 정치공동체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등한 지위 보장이 곧 '동일성'의 원리이다. 이 동일성의 원리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적 원리였으며, 근대 민주주의 추동의 핵심적 기초이다. 루소가 일반의지(general will)의 근거로 인민을 상정하며 주창하는 핵심 역시 이 동일성의 원리에 있다.

> 피지배자는 곧 지배자이어야만 한다: 국가의 문제는 곧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로 통합되어야만 한다(Rousseau 1968, 82; 114).

www.kci.go.kr

동일성의 원리는 논리 필연적으로 신귀족층에 의한 지배를 고착화하는 근대 이후 '민주적' 권력관계, 지배 원리를 문제 삼는다.[9] 반면, 근대 정치에서 민주적 정당성, 즉 '동의' 원리의 핵심은 피지배자들의 '승인'과 '인정'에 있다. 근대 대의제의 출발 당시 동의의 문제는 동일성의 평등 원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마넹의 지적처럼, 피지배자의 동의가 곧 정당성의 유일한 혹은 원칙적인 근원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마넹은 『대의정부의 원칙(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동일성 원리에 기반한 선출 원리인 '추첨(lot)'의 민주적 속성에 주목한다.[10] 추첨은 이미 아테네의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피렌체와 베네치아 등 공화주의 정치형태의 주된 관직 선출의 원리였다. '추첨'은 '선거'와 달리 동일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교체원리이다. 마넹에 따르면, 추첨은 헤링턴, 몽테스키외, 루소의 저술 등에서 중요한 민주적 대의 원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론자들의 고민에서도 추첨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었다(Manin 1997).

그러나, 근대혁명은 추첨의 원리가 아닌 선거를 교체의 원리로 삼았다. 마넹은 근대 대의제 하에서 반복적인 Q.O.T 원칙의 사용이 피지배자의 동의를 정치적 정당성과 구속력의 근원이라는 신념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동의' 원리는 민주적이라고 간주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다(Manin 1997, 87ff)고 말한다. 근대의 세 혁명은 모든 정당한 권위는 그 권위가 행사될 대상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원

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토의 민주주의에 공화주의적 '지배' 개념을 접목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다. 최근 로마 공화주의적 화두로부터 제기되는 '비지배 자유'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이 '비지배 자유' 개념은 상호성으로 연결되어 토의 민주주의를 보다 폭넓게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곽준혁 2010, 26-32를 참조.

10) 이 책은 1995년 불어로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Bernard Manin의 1997년 영어판 초판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 Press.를 활용하고 있다. 국역본으로 곽준혁 역, 2004.『선거는 민주적인가』(후마니타스)가 있다. 역주와 후기 등 번역본의 인용시에는 출처를 『선거는 민주적인가』로 구분하였다.

www.kci.go.kr

칙, 즉 개개인은 그들이 동의했었던 바에 의해서만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으로 이루어졌다.[11] 선거는 별다른 저항 없이 관철되었다. 동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첨의 원리는 선거에 비해 간접적이었고, 동의의 효력 면에서도 선거가 더 유효하게 비추어졌다. 추첨에 기초한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추첨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선출된 사람은 그가 권위를 행사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 권좌에 앉은 것이 아니다. 추첨이라는 우연적 요인에 의해 권좌에 앉게 된다. 반면 선거 체제에서는 시민의 동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선거를 이용하고자 결정했을 때의 동의 뿐만 아니라 개별적 결과, 즉 선출(특정인에 대한 지명-인용자)에 대해서도 동의가 작동한다. 동의에 기반한 권력과 정치적 구속력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분명히 선거는 추첨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 보였다(Manin 1997, 85).

선거와 세습의 명확한 차이가 비세습적인 절차인 추첨과 선거가 갖는 배분적 효과의 차이를 무시할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당시 관직이 시민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배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관직의 배분적 정의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제 시민들은 스스로 관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간주되었다(Manin 1997, 90-93).

시에예스는 권력의 위임과 관련한 대의적 공통의사의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12] ① 이 의사는 대표자 단체

---

11) 마넹은 영국 혁명의 푸트니 논쟁(Putney Debate)에서 그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자로부터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권리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정부가 세워지고 그들의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프랑스혁명 당시 뚜레(Thouret)의 권리선언 초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모든 시민은 개별적으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해 법률의 제정에 동의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동의한 것에만 복종할 권리를 가진다(Manin 1997, 83-85)."

12) 시에예스는 정치사회의 형성을 세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제1시기가 서로

www.kci.go.kr

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무제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 국민의 커다란 공통적 의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② 대표자들은 이를 고유한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타인의 권리이며, 공통적 의사는 그 위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시에예스 2003, 92). 그러나 정치적 현실은 시에예스의 이 순진한 기대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 정치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피지배자의 동의 방식은 '공직선거'이다. 동의의 원리는 선거의 원리와 공생관계에 있다. 피지배자들의 의사는 '투표'로 확인된다. 선거는 그 속성상 민주정과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distinction)"[13] 인 귀족정의 원리이다. '탁월성의 원칙'에 충실하여 엘리트의 공직 독점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 선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선거이다. 귀족정은 민주정과 정반대의 정치원리를 구사한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도 명료하게 확인된다. 오늘날 피지배자의 동의에 기반한다는 것은 엘리트의 현대판 귀족정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rhetoric)에 불과하다. 대의제 원리 하에서 인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옹호되는 '다수결 원리' 또한 그 본질상 민주적 원리와 충돌한다. 최대 다수의 행복(이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승리한 다수에 속하지 못한 견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동의의 원칙에서도 한 단계 더 변형된 논리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의정치 체제에서 국민주권 이념의 무력화가 의도된 것이라는 에르메(Hermet)의 주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르메는 "근대적 대의정

결합하고자 하는 상당수의 고립된 개인이 상상되는 시기이다. 제2시기는 공통적 의사의 실행 시기로 전체 국민의 의사가 결과적으로는 권력이라는 부분의 행사를 그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시기이다. 제3시기는 위임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의 시기이다(시에예스 2003, 90-92). 선거는 제2시기에 속하고 그 효과는 제2시기부터 제3시기까지 걸쳐 나타난다.

13) 이에 대해서는 Manin 1997. 94-131을 참조.

www.kci.go.kr

치 창안자들의 창안물은 어쨌든 애초에는 인민의 열망을 막아내고 그 영향을 지연시키는 장치로서 발달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장인'들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려 하기보다는 제한하려고 애썼다…대의의 원칙을 바람직한 정치의 황금률로 삼고, 인민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모든 길을 막았다(에르메 1998, 21)"고 말한다. "인민을 예찬하면서도 그들이 자기네 엘리트 집단 구성원들의 재산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이들은 인민으로부터 실제로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을 모두 빼앗지 않을 수 없었다(에르메 1998, 40)."

선거는 선출된 대표와 피선출자 사이의 경계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선거의 '탁월성의 원칙', 즉 선출자는 사회적으로 구분되는 탁월한 시민이며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정치적 평등 원리 자체를 변경시켰다. 이제 평등은 공직 배분의 평등이 아니라 1인 1표의 산술적 평등, 즉 투표할 권리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피선거권자인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신분적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근대 대의제의 구획 장벽을 넘어설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근대 대의제의 정당성 원리로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동의'의 원리는 민주적 평등 원리의 역사적 변형태이다. '동의' 원리는 '평등-동일성'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히 '우월자' 지배에 대한 '승인' 원리로 변형되었다.

3. 경계해야 할 두 가지 : 철인지배와 다수결정 원리

1) 철인 지배와 민주주의

탁월성의 원칙이 민주적 대표선출의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역설(paradox)'이다. 탁월성 원리

www.kci.go.kr

의 원조는 지성적 '지혜'(지식)의 탁월성을 지배 정통성으로 간주한 플라톤(Platon)이다. 이 흐름은 '철인치자(哲人治者)'(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칸트)가 주창된 이래, '철인 입법자'(데카르트, 루소), '철인 혁명가'(마르크스, 레닌), '철인총통'(니체)으로 이어져 왔다(황태연 2010, 25). 여기서는 이를 통칭하여 '우월자 지배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우월자 지배론과 민주적 평등 원리는 화해할 수 없는 상충의 원리이다. 권력의 위임을 받는 자와 이를 선출한 인민의 관계는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다.[14]

플라톤의 『국가』에서 '치자'는 선의 이데아를 본(아는) 자, 신(神)적인 덕(德)인 현명함(똑똑함)의 덕을 소유한 자이다.[15]

>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각고 끝에 보게 되는 것이 '선(to agathon)의 이데아'이네. 그러나 일단 이를 본 다음에는,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옳고 아름다운(훌륭한) 것의 원인(aitia)이라고, 또한 '가시적 영역'에 있어서는 빛과 이 빛의 주인을 낳고,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영역'에서도 스스로 주인으로서 진리와 지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장차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슬기롭게 행하고자(prattein) 하는 자는 이 이데아를 보아야만(idein)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만 하네(517c).

---

14) 마넹은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변화를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2. 선거의 승리' 중 '선거의 승리: 관직수행에서 권력에 대한 동의로(consenting to power rather than holding office)'라는 소절의 제목은 추첨과 선거의 차이를 함축적으로 드러내준다. 이제 권력의 위임을 받은 자는 관직수행이라는 의무적 성격의 제약을 벗어나 동의에 기반한 권력자로 현상한다.

15) 플라톤의 *Politeia*편의 인용은 박종현 역. 『국가·正體』. 서광사. 2008년 개정판을 따르고 있다.

www.kci.go.kr

플라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행하게 될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목표로 삼아야 할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를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519c)." 반면, 선의 이데아를 본 자들도 바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이유는 앞서의 경우와 다르다. "이 경우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축복받은 자들의 섬들에 이주한 것으로 믿고서, 공사(公私)간에 자진해서 행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519c)"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할 뿐, 저들 죄수들 곁으로 다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노고와 명예를, 이게 다소 하찮은 것이건 대단한 것이건 간에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519d)"다.

플라톤에서 치자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인간사에 마음 쓰고(prattein) 싶어 하지 않고, 이들의 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지내기를 열망(517c)"한다. 이들은 (인민들이 사는) 어둠의 동굴로 결코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플라톤이 애써 그 이치를 설명해주어야 비로소 지상의 통치를 위하여 마지못해 '내려오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느 시민들과의 동거를 위해 각자가 번갈아 내려가서는, 어두운 것들을 보는데 익숙해져야만 하오(520c)." 이 치자가 통치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한 이 세계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마치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들 암투를 하며 반목(520d)"하고, 결국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런 싸움은 동족간의 내란으로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512a)"시키게 된다.

플라톤에서 인민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심지어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죄수들로 비유되고 있다. 무지한 다수의 폭정에 대한 우려는 플라톤에서부터 민주주의의 태내에 각인되었다. 우월자에 의한 지배는 인민(대중)에 대한 기대를 제거한

www.kci.go.kr

다.[16] 인민은 '무지한 죄수들'(플라톤)이자, '쓸데 없는 잉여인간'(니체)이다. 슘페터(Schumpeter)는 정확히 우월자 지배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인민이란 용어 대신에 오합지졸(the rabble)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그 죄악성(criminality) 및 우둔성(stupidity)과 싸우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Schumpeter 1994, 242).

슘페터에게 민주주의란, 우월자 즉 엘리트 지배의 절차적 승인 원리이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선거이다. 그는 "인민과 지배라는 용어의 어떤 의미를 보아도 민주주의가 인민의 실제 지배를 뜻하지 않으며, 또한 뜻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Schumpeter 1994, 275)"라고 말한다. 정치가의 지배를 승인한 후에는, 즉 정부가 선임되고 나면 유권자는 다음 선거시까지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지배와 피지배의 동일성 원리는 고사하고,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전근대적 신민의 지위로 내려 앉는다.

흥미롭게도 인민주권의 주창자인 루소에게서도 우월자 지배 원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루소는 인민의 죄악성, 우둔성을 걷어내고자 하였으나, 루소의 일반의지를 통하여 우월자의 존재가 재현된다. 루소의 일반의지는 인민과 분리되어 있다. 일반의지를 담당할 입법자의 영역

16) 니체(Nietzsche)에서의 우월자는 초인(차라투스트라)이다. 차라투스트라는 플라톤의 철인과 달리 지상의 통치를 위해 스스로 내려온다. "나는 나의 넘치는 지혜에 싫증이 났다. 너무 많은 꿀을 모은 꿀벌처럼. 이젠 도움을 달라는 손길이 필요하다. 나의 모든 지혜를 나누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가야 한다." "차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니체 2007, 11-12)." 차라투스트라는 잠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우월자의 지배를 꿈꾼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지상에 나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나는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손을 가졌다(니체 2007, 54)."

www.kci.go.kr

은 개별의지의 유혹에 쉽사리 현혹되는 인민과 별도의 위치를 점한다. 인민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주창되는 것 같지만 그 실체는 '본성을 변화시켜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17] "개인들은 선(good)을 알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공중은 선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지를 이성에 부합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공중에 대해서는 그들이 바라는 바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Rousseau 1968, 83)." 이 역할은 입법자[18]의 몫이다. 루소에게서 인민은 입법자가 법을 주는 대상이자, 그 법률에 적합한지를 검토 받아야 하는 수동적 지위를 점한다(Rousseau 1968, 88-90).

2) 일반의지의 이율배반과 다수결 원리

민주주의자이건 자유주의자이건 간에 우리가 개인의 의지에 기반

---

17) 김용민 교수는 일반의지의 난점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어떻게 무임승차자에게 차비를 내도록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치자. 일반의지가 직면하는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이기적, 사적 행위에 대한 공공의 견제가 가능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누구라도 무임승차자와 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도 차비를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지하철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다. 김교수는 루소가 여기까지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 보완책으로 입법자와 시민종교를 제시한다고 말한다(김용민 2001, 121). 루소의 "입법자는 오직 신의 권위를 빌어 사회성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지혜를 배경으로 독립적인 존재인 자연인을 도덕적인 존재인 시민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위 글 121)." 필자는 민주주의에서 인민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적 권위를 빌은 '탁월한' 입법자의 계몽적 교육을 통해서만 공공이익을 위한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시민들의 공공성은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효과, 시민들 사이의 도덕적, 규범적 공감의 작용으로 가능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렇게 본다면, 루소의 입법자는 변종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8) 물론 일반의지를 계몽시키는 입법자가 슘페터와 같은 엘리트 민주주의론자들이 지칭하는 선거의 선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루소가 상정하는 입법자는 어느 관점으로 보나 뛰어난 사람이다. 그는 재능(genius)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직무(office)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람이다. 입법자는 행정기관(government)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다. 이 직무는 국가(의 헌법-인용자)를 조직하는 것이지만 그 헌법 속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한 국가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특별하고 뛰어난 기능이다(Rousseau 1968, 85).

www.kci.go.kr

해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영역에서 정당성 원칙으로 기능해 온 것이 소위 '만장일치(unanimity)'의 원리이다. 그러나 이 정당성의 준거로서의 만장일치 원칙은 효율성 문제에 직면하여 보다 수월한 현실적 원칙, 즉 '다수결(majority)' 원칙으로 대체되어 왔다. 다수결의 원칙과 만장일치의 원칙 사이에 의심스러운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시에예스에 있어 공동의지(common will)는 개인의지의 총합이다. 그에게 만장일치는 모든 개인 의지들의 총합을 의미한다. 반면, 그는 수백 만명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불가능의 현실에 직면하여 시에예스는 만장일치의 정당성을 과반수(plurality)로 대체한다. "우리는 과반수에 만족해야만 한다 … 과반수는 정당하게 만장일치를 대신하게 된다."[19] 시에예스는 정치 현실에서 만장일치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다수결이 곧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만장일치의 모든 특성을 다수결에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의지를 만장일치의 의지로 전환시켰다(Manin 1987, 342).

대의 원리에 있어서 시에예스와 다른 견해를 갖지만 루소가 정당성의 원천으로 만장일치를 신뢰한다는 점에서는 시에예스와 공통적이다.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는 그 원칙에 있어 만장일치의 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루소가 일반의지와 전체의지(will of all)를 구분하지만, 마넹이 보기에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단지 원칙과 실행의 차이에 불과하다. 마넹은 루소의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을 인용하면서, 루소의 일반의지가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성원의 의지임을 밝힌다. 각 성원들이 투표를 할 때 일반의지는 투표수에 의해 추론된다. 이때 소수

19) Sieyès *Préliminaire*, 38., 여기서는 Manin 1987, 342쪽에서 재인용.

www.kci.go.kr

의 견해는 단지 일반의지의 견해에 대한 몰이해에 불과한 것이다 (Manin 1987, 343-344).

마넹의 논지에 따르면, 루소에게는 인민의 편에서 일반의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의지의 이율배반이 발생한다. 루소의 구상과는 달리 인민주권 원리가 동일성의 원리가 아니라 동의의 원리에서, 승인의 절차적 방식 즉 선거를 통해 작동하도록 제한되고 말았다. 마넹은 그 핵심이 '정치적 토의' 원리에 대한 루소의 의미축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루소의 일반의지의 성립이 ① 다양성보다 일체성을 전제로 제시하고 있고, ② 심의(인용자- 토의)가 결정에 선재하는 과정이라기보다 결정 그 자체를 의미하며, ③ 개인이 심의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정치적 심의와는 매우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이나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주의적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선호-집합적 합의 모델에 기초한 이론가들도 심의에 관한 한 루소와 유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0]

효율이 민주주의의 공리(metric)가 아니고 다수의 결정이 민주주의의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산술적 총합에 근거한 결정원리가 민주적 정당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의지의 현실적 활용이 다수결에 기반한 선거로 전도되는 순간 일반의지의 이율배반이 발생한다. 허스트(Hirst)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집중화된 국가에서 정책결정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결정원리, 즉 대의제 민주주의 의회에서의 다수결 원리는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경고한다. 다수의 결정은 불연

20) Manin 1987. 347.ff의 내용을 곽준혁 교수가 일부 보완한 것인데, 마넹의 논지를 잘 요약해주고 있어서 Manin 1997의 국역본인 곽준혁 역 2004.『선거는 민주적인가』(292쪽)의 <역자후기>에서 인용하였다.

www.kci.go.kr

속적인 반면에 행정은 연속적이고, 다수는 종종 인위적이며 이질적인 이해관계의 연합이기 때문이다(Hirst 1990, 33-34).

급진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며 정의론을 논구한 롤즈 역시 마지막 출구를 만장일치에 기대고 있다. 다수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가 정당성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다수결 원리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각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Manin, 1987, 340-341 참조). 여기서 우리는 만장일치 자체가 곧 민주적 정당성 원리는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는 그 자체 불가능한 통일성을 전제하는 원리일 뿐이며, 현실적 필요에 의해 곧바로 다수결정 원리로의 전환을 예정한다. 다수 결정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방법 중 유력한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대체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니다.

현대 정치에서 다수란 어떤 의미인가? 투표 거부자, 불참자 뿐만 아니라 투표 직전의 여론 조작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다수는 일회적, 일시적 '다수'를 구성할 뿐이다. 이러한 일회적 다수의 결정을 사회적 공공선의 창출로 이어지는 공적 결정의 정당한 원칙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버마스는 다수결정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법적 절차의 한 예증이며, 논의의 중간 휴지기(caesura)인 한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합리적으로 동기 지워졌지만, 오류 가능성 있는 결과로서만 정당화된다.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에 의해 제한된다(Habermas 1996, 180)."

www.kci.go.kr

4. 동일성 원리에 대한 몰이해

1) 토의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토의 민주주의의 논의 경향은 다양하다.[21]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장점을 결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문제를 도입하되 절차적 측면을 부각하는 논자로는 하버마스가 있다. 그는 소통합리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비관적 공론장 테제를 수정하고 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토의 민주주의를 한층 정교화하고 있다. 보먼(Bohman), 벤하비브(Benhabib), 코헨(Cohen) 등의 이론적 경향도 집합적 결정이나 공동의 이해도달, 보편적 이성의 기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와 유사하다. 롤즈는 자유주의 경향을 벗어나 다원주의 사회의 정의론을 전개하면서 '공적이성'에 착목한다. 롤즈의 '숙고된 판단', '반성적 평형', '중첩적 합의'와 같은 개념은 토의 민주주의론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김명식 2001, 369. 참조). 토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시민적 신뢰를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이론 경향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전통에 서 있는 밀러(Miller)가 있다. 그는 시민적 신뢰가 연대의식을 통하여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곽준혁 2010, 20). 도덕적 불일치와 같은 현대 민주주의 특성으로부터 토의원리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만(Gutmann)과 톰슨(Thompson)의 논의도 중요하다. 이들은 상호성, 호혜성의 원리를 강조한다(Gutmann&Thompson, 1996).

이와 같이 각 개별 이론가들의 강조점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토의 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기초를 전제한다. (가) 심의(토의-인용자)를

---

21) 이에 대해서는 Richard Blaug, 1996.를 참조할 수 있다. 정규호(2005)는 토의 민주주의자들의 강조점에 따라 '규범중심적', '과정중심적', '성찰중심적' 차원으로 분류를 시도한 바 있고, 곽준혁(2010)은 심의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주의적, 공화주의적, 상호성과 조정원칙의 강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www.kci.go.kr

통한 의사결정은 참여자들 모두가 적절하다고 느껴야만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판단이 선험적이거나 고정불변한 기준에 기초하지 않아야 하고, (나) 만장일치와 같은 이상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가치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이익들이 충돌하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심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 참여 그 자체를 이상으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심의를 통해 상호협력의 조건들이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참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Nino 1996, 67-106. 여기서는 곽준혁 2010. 18. 재인용).

이와 같이, 토의 민주주의는 선험적 전제를 거부하고, 소수자에 대한 포용성(개방성) 및 다수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토의 민주주의는 동등한 다수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원리를 중시한다. 그 핵심은 동일성의 원리에 있다. 이 동일성의 원리는 근대 혁명의 과정에서 동의의 원리에 자리를 내어 준 이후 규모의 문제로 축소된 채 직접 민주주의로 간주되거나 더 나아가 동질성, 동종성의 변종 민주주의로 귀결되기도 하였다.

2) 동일성의 원리와 규모의 문제

동일성의 원리를 현대 민주주의의 시야에서 제거한 결정적인 오류는 규모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근대 국가의 규모에서 동일성의 원리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구에니페이(Gueniffey)는 추첨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만 정치적 의무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첨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치적 기능이 단순해야 하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Manin 1997, 81-82). 마넹은 이러한 견해가 추첨을 통한 통치자 선발에 관심을 표명한 몇 안되는 근대 저자

www.kci.go.kr

중 한 사람인 슈미트(Schmitt)에게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22]

루소 역시 동일성의 원리를 규모의 문제로 접근하였다. 루소에 따르면, 동일성의 원리는 '작은' 나라에서 가능하다. 결국 루소에게서 동일성의 원리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속으로 갇히고 만다. 루소는 주권자가 정부를 인민 전체 또는 대다수의 인민에게 위임하여 평범한 사적 시민보다 통치자로서의 시민의 수를 더 많게 할 수 있는 정부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반면, 귀족정은 정부를 소수의 수중에 제한시킴으로써, 통치자로서의 시민 수보다 평범한 시민을 더 많게 만드는 정부의 형태이다. 주권자가 정부를 단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 한 사람으로부터 도출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일상적 형태이며 군주정, 또는 왕정이 그에 해당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부형태에 관한 설명과 다르지 않다. 루소는 이러한 정부형태가 갖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최고행정관과 시민 수의 비례를 들어 민주정치는 작은 나라에 적합하고, 귀족정치는 중간크기, 군주정은 큰 나라에 적합하다(Rousseau 1968, 110-111)고 말한다.

역대로 이 규모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아 온 오래된 (경험되지 않은!) '선험적' 명제이다. 몽테스키외도 루소와 마찬가지로 "공화국은 그 본성상 작은 영토 밖에 가지지 못한다. 대제국이 존립하는 데에는 그 전제로서 통치자에게 전제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몽테스키외 2009, 145-147)"고 주장하며 이 편견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흄(Hume)은 『법의 정신』 출간 4년 뒤에 국가의 방대성이

22) Manin 1997, 81쪽의 각주 100)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슈미트가 동일성의 원리에 주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서 동일성의 원리가 어떻게 전도되어 나타나는가를 본다면 규모의 문제를 수용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 '동일성의 원리와 동종성의 치환'에서 후술하였다.

www.kci.go.kr

다수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전제주의에서 해방된 민주국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23] 흄은 오히려 연방공화국이 그 방대성 덕택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유리하고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의 한 사람인 메디슨(Madison)은 흄의 이 논리를 활용하여 국가의 방대성을 다수의 횡포와 전제를 막는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미국 헌정체제의 밑그림을 민주적 연방국가로 기안한 바 있다(황태연 2010, 172).

이와 같이 근대 국가의 방대함이 동일성 원리의 적용을 막아 왔다는 선험적 명제는 경험적으로 틀렸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왜 17-18세기 카운티들은 고대 아티카나 르네상스의 피렌체보다 더 크지도 않았고, 인구도 적었는데 추첨의 원리를 고려하지 않았는가(Manin 1997, 82)"라는 마넹의 반문은 정당하다. 오히려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동일성의 원리를 동종성으로 치환하는 슈미트적 왜곡이 규모가 적은 곳 (즉 민족의 신화가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에서 더 쉽게 관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모가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 동일성의 원리를 직접 민주주의 원리로 치환한 오류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발현할 매개를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으로서 동일성의 원리를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다.

토의 민주주의는 바로 그 매개를 겨냥한다. 토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토의" 원리에 주목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구체적 실현과정을 규모의 문제로부터(더 나아가 신적 능력을 빌은 입법자를 상정하지 않고) 구제하여, 민주적 원리의 문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토의 민주

---

23) 이는 David Hume, "Idea of a Perfect Commonwealth"(1752), in David Hume, 2006, edited by Kund Haakonssen, *Political Essays*, Cambridge Univ. Press. 230을 보라 (여기서는 황태연 2010, 172 재인용).

www.kci.go.kr

주의에서는 규모의 문제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의 민주주의는 제도적, 비제도적 영역을 넘나드는 원리의 형성과 구현에 주목한다.

토의 정치[24]는 개인적 권리와 인민주권의 내적 상관성을 견지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정치 축소나 공화주의적 정치과잉에 치우치지 않는 동시에 제도적 영역과 비제도적 영역의 쌍선적 정치기획을 통해 인민주권의 민주적 발현 양상을 제시할 수 있다. 토의 정치는 민주적으로 조직된 의지형성과 비공식적 의견형성간의 상호작용으로 살아간다(Habermas 1996, 308). 토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합리적 방법으로 공적 목표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회합하는 것을 말한다. 토의 민주주의는 공적인 것을 창출하고 시민들이 집단적인 문제, 목표, 이상, 실천 등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민주적 과정들은 개별적인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한 경쟁보다는 공동선에 대한 논의에 정향되어 있다(Young 1996, 121).

이처럼 토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사적인 영역으로 한정해 놓았던 시민사회의 제도들, 개인들, 사회적 운동들이 공적인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인 시민적 결사체 사이의 경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토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적 견해와 달리 공적인 영역을 구성한다. 토의 모델의 절차적 구체화는 결사체의 다원성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관점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특권화 한다. 이러한 결사체는 (국가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정당, 시민발의, 사회운동, 자원봉사조직, 시민의식 그룹 등등을 포괄한다. 결사체의 다원성, 네트워크, 조직들의 연쇄적 그물망이 익명적인 "공적 대화(public conversation)"로 귀착된다. 이와 같이 상

24) 토의 정치(deliberative politics)의 보다 구체적 내용은 Stephan Macedo (eds.) 1999를 참고할 수 있다.

www.kci.go.kr

호 교차적이고 중첩되는 토의나 논쟁을 수행하는 네트워크와 결사체들의 공론영역을 특권화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토의 민주주의 모델의 핵심이다(Benhabib 1996, 73-74).

3) 동일성의 원리와 동종성의 치환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두 번째 굴절은 동일성의 원리를 동종성의 원리로 치환하는 슈미트(Schmitt)에게서 찾을 수 있다. 슈미트는 동종성 원리에 기반하여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까지 나아간다. 슈미트에게 동일성의 원리는 인민의 이름으로 터져 나오는 열광의 주술적 마력과 히틀러의 신비적 권위의 일치로 재현된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합치라고 주장한다.

슈미트의 구분에 따르면, 볼셰비즘이나 파시즘이 모든 독재와 마찬가지로 반자유주의적이기는 하나 반드시 반민주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국민의사는 환호, 갈채에 의해서 자명하고 반론 없는 존재에 의해서, 이 반세기 이래로 면밀한 조심성을 가지고 형성되어 온 통계적 장치에 의해서 한층 더 민주적으로 표명될 수 있다(슈미트 2001, 92)."

슈미트에게 민주주의는 동질성의 기반 위에서만 완전하게 구현될 수 있는 원리로 해석된다. 슈미트에 있어 자유주의는 '갈등'과 '이종(異種)'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연결되는 현대 대중 민주주의에서 이 이질적인 혼성물을 제거해야만 참된 의미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자유주의 이론가들이나 대다수 민주주의론자들이 기대고 있던 '만장일치'의 민주적 정당성은 슈미트에서 보다 구체화된 동종적 일체성으로 표현된다. 슈미트에게 있어 전체의 완벽한 동의는 동종성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

슈미트는 민족적 동질성의 기초 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려고

www.kci.go.kr

한다. "인류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일 뿐이지 결코 민주주의 사상은 아니다." 슈미트의 정치관은 동종성, 동질성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과의 투쟁으로 귀결된다. 슈미트의 민주적 평등은 동질성이 존속하는 곳에서만 의미를 갖는다(슈미트 2001, 84-86 참조).

> 정치적인 것의 핵심은 오로지 적대관계 자체만은 아니고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며, 적 그리고 동지라는 양자를 전제로 한다(슈미트 1995, 149).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구분(Unterscheidung von Freund und Feind)'은 어떤 실체적 척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존적 대립 자체이며, 정치 개념에서의 적은 공적으로서 정치적 통일성(politische Einheit)을 해치는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정태욱 2002, 153). 정치적 통일성을 위한 극단적 편향으로서의 동일성 원리, 즉 슈미트의 동종성 원리가 동원되는 것이다. 슈미트의 이러한 정치관[25]은 정치적 통일성을 핵심으로 하는 그의 헌법관 뿐만 아니라 주권관과 민주주의관을 지배한다. 동종성은 이종에 대한 배제를 기초로 하며,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의 핵심이 된다. 슈미트에게서 사회세력들의 대립과 각축, 사회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은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써 '적'일 뿐이다.

슈미트의 적과 동지의 정치관은 극히 위험스러운 결론으로 향한다. 슈미트의 자기 지배원리가 동일성(Identität)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

25) 슈미트는 자신의 정치관을 저 멀리 레닌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다. "레닌이 클라우제비츠로부터 배울 수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배운 것은 정치의 연속으로서의 전쟁이라는 공식만이 아니었고, 적과 동지의 구별은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또 전쟁과 정치까지도 규정한다는 보다 진보된 인식도 배웠다 … 그가 다른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맑스주의자들보다도 우월한 것은 절대적인 적대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 점에 있었다(슈미트 1995, 87-89 참조)."

www.kci.go.kr

곧 국민의 자연적 동종성(Gleichartigkeit)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동종성은 적과 동지를 나누는 근간이 되며, 민주주의는 동종성의 틀에 포섭된 사람들을 근간으로 하는 원리가 된다. 이처럼 슈미트에게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동일성 원리의 극단적 변종인 '동종성'으로 귀결된다.[26]

단일성을 가정하지 않는 사회계약론의 원리는 슈미트의 논지와 충돌한다. 슈미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상이한 요인을 일관성 없이 병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만인과 만인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사상은 대립하는 이해, 차이, 그리고 이기주의를 전제로 하는 완전히 다른 사상계, 즉 자유주의에서 생기는 것이다. 슈미트가 보기에 루소의 일반의지가 가능하려면 바로 '동질성'에 입각해 있을 때이다. 그는 이것만이 시종일관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슈미트 2001, 89). 슈미트는 사회계약론을 '계약'으로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질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이 동질성 개념을 확장하여 치자와 피치자의 민주주의적 동일성으로 연결 짓는다. 이러한 슈미트에서 민주주의는 핵심 준거를 상실한다. 슈미트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만드는 정치적 공론장, 정당, 시민단체, 의회, 정부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종'의 상호작용을 아예 배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토의 민주주의의 이상[27]은 슈미트와 반대로 '이종', '차이'를 전제하

---

26) 모든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불가피한 귀결로서 '동일하지 아니한 것은 동일하지 않게'(강조-인용자)라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첫째 동질성이 필요하며, 둘째로 (필요하다면) 이질적인 것의 배제 또는 섬멸이 필요하다(슈미트 1995, 83-84).

27) 코헨이 제시하는 토의 민주주의의 이상적 조건에 대한 상은 이해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하버마스의 논의(discourse)의 이상과 맞닿아 있고, 드라이젝이 논의(discursive) 민주주의 개념의 기초로 의존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서는 Cohen 1989; Habermas 1984; Dryzek 1990을 참조할 수 있다.

www.kci.go.kr

고, 이들의 상호성에 주목한다. 토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규범이나 자격 요건의 권위에 의한 참여자들의 통일성 강제를 거부한다. 정치적 논의 과정은 만장일치나, 동종성에 기반한 배제원리가 아니라 타당한 주장으로 구성된다. 논쟁의 참여자들은 '더 나은 논증의 힘(force of the better argument)'에 의해서만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동의가 합리적이기 위해서 참여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의견의 제안과 비판에 있어 반드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들의 대화 상황은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 어떠한 특정 지위도 어떤 제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도록 타인을 위협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Cohen 1996, 22-23).

더 나아가 토의 모델은 슈미트의 배제, 섬멸의 대상, 즉 '이종'과 '차이'를 바탕으로 한다. 토의 모델은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 토의 민주주의는 '호혜성', '공공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자유주의적 이기심의 총합이나 슈미트의 극단적 동질성 원리로 해명할 수 없는 도덕적 불일치[28]의 문제들까지 포괄한다. 토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소통의 원리는 포용의 원리, 구성적 공공선의 원리, 참여의 원리를 전제한다.

5. 토의 민주주의의 잠재력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대두되는 오늘날 극단으로 치닫는 엘리트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력한 원리가 토의 민주주의이다.

---

28) 도덕적 불일치의 문제를 토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논의로는 Gutmann&Thompson 1996이 대표적이다. Macedo. 1999.는 민주주의와 불일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www.kci.go.kr

토의 민주주의는 개인적 선택의 총합에 근거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성찰의 근거를 제시하고,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엘리트들이 결정권을 독점하는 '우월자 지배'의 효과를 상쇄하고자 한다. 토의 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1인 1표에 기반한 산술적 평등 원리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도와 절차의 성숙도나 효과성은 공동체마다 그리고 공동체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는 다분히 정도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 간의 양자택일의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 민주적인가 하는 관점이 더 유용하다는 뜻이다(윤경준・안형기 2004, 149). 토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심화(deep)' 민주주의(Young 2000; Fung&Wright 2003), '진정한(authentic)' 민주주의(Dryzek 2000) 등의 개념을 제출하는 맥락 역시 보다 더 나은 민주적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토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정당성 문제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토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어떻게 민주적인가?'에 주목한다. 따라서, 종종 실현 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실현 가능성이란 곧 효율성의 문제를 동반한다. 제도주의자들이나 현실주의자들은 논의(discourse) 모델이 전혀 적용 가능성이 없는 순진한 모델일 뿐이며, 군중적이고 반제도주의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한 모델로 간주(Benhabib 1996, 74) 하거나 소모적이고 무모한 것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최근의 토의 민주주의 적용 사례들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29] 시카고의 '주민 거버넌스 위원회', 미국의 멸종위기 생물을 위한 '서식지 보호 계획', 브라질 포르투알레그

www.kci.go.kr

레의 '참여예산제', 인도 웨스트 벵갈가 케라라의 '판차야트 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펑과 라이트(또한 오현철 2006, 112-113)는 자신들이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ment)로 명명한 토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전통적인 대리인과 전문가들의 명령 및 통제와 비교할 때, EPG는 대리인과 전문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사회 통합적 방식으로 해결 하였다. 둘째, 선호집합 투표와 비교할 때, 투표는 합당성, 공정성, 타인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못했다. 셋째, 전략적 협상과 비교할 때, 전략적 협상에서 사용하는 수단은 위협, 영향력, 허위진술 등이었다. 이러한 방식들과 달리 토의는 가장 민주적인 동시에 당면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Fung&Wright 2003, 18-19)."

토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적 자기-지배의 원리, 즉 동일성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엘스터는 토의 민주주의의 민주적 요소를 "결정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이들 혹은 그 대표자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또한 동의의 원리에서도 소극적, 수동적 동원자가 아니라 "토의적 요소는 합리성과 공명정대성의 가치를 수용하는 참여자들이 그 참여자들에게 제시되는 논증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Elster 1998, 8)"는 적극적 동의 원리를 구사한다.

이와 같이 토의적 가치의 핵심은 첫째, 법률과 정책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단순히 주어진 이익균형을 대표하는 것에서 찾지 않고, 그 법

29) '지방의제 21'과 관련한 국내 연구도 이상적 심의(토의-인용자)상황이 충족될수록 의사결정 과정 및 의사결정결과의 효과성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심의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효과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윤경준 · 안형기 2004).

www.kci.go.kr

률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롭고 공개된 토의의 조건에서만 확립될 수 있는 합리적 수용가능성에서 구한다(Greiff 2000, 410-412)는 점에 있다. 둘째, 토의 가치는 국민이 공개적인 논쟁과 대화를 통해 결정에 관여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은 대중이 오직 투표자로서만 관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 대안적 관점들이 논쟁되는 집합적 토의과정을 경험하지 않은 대중이 결정을 내리는 직접민주주의와도 대비된다(피에르 2003, 205).

따라서, 토의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참여', '정보공유', '토의의 개방성과 평등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 내용을 공유한다. 이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원리가 만들어 놓은 정보의 독점, 사회적 권위, 소수의 배제 등에 의한 민주적 가치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집편에 실린 "토의 민주주의와 시민의회"는 토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시민의회의 정치적 역할은 토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1996년 선거, 2001년 선거는 다수결의 산술적 대표성이 갖는 한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 '균형 잃은 승리'의 정치적 독단과 더불어 중년 백인 남성 중심의 엘리트 지배, 즉 민주적 '신귀족층'의 특권화 상황에서 '시민의회'가 보여준 정치적 가능성은 토의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토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치적 도전이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가꾸는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해본다.

(2010년 11월 16일 접수, 2010년 11월 23일 게재)

www.kci.go.kr

참고문헌

곽준혁. 2010. “심의 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참된 소통이 있는 사회를 향한 이야기들』. 11-39.

김경희. 2009.『공화주의』. 책세상.

김명식. 2001. “새만금과 심의적 의사결정.”『철학연구』. 58. 355-374.

김용민. 2001. “루소의 일반의지에 나타난 권력 개념: 정당성을 중심으로.”『정치사상연구』. 5. 2001년 가을. 105-230.

니체. 곽복록 역. 2007.『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동서문화사.

로젠베르크. 박호성 역. 1990.『프랑스대혁명 이후의 유럽정치사: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역사비평사.

마넹. 곽준혁 역. 2004.『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몽테스키외. 하재홍 역. 2009.『법의 정신』. 동서문화사.

박정희. 1961.『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동아출판사.

슈미트. 김효전 역. 1995.「정치적인 것의 개념」. 법지사.

슈미트. 김효전・박배근 역. 2001.「입장과 개념들」. 세종출판사.

시에예스. 박인수 역. 2003.『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책세상.

에르메. 임미경 역. 1997.『민주주의로 가는 길』. 한울.

오현철, 2006. “토의민주주의: 이론 및 과제.” 주성수・정상호 편저.『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101-122.

윤경준, 안형기. 2004.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한국행정학보』. 38(2). 149-166.

이갑윤・이현우 편. 2009.『한국 국회의 현실과 이상』. 도서출판: 오름.

이남석. 2001.『차이의 정치』. 책세상.

정규호. 2005.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논리의 특성과 함의”.『시민사회와 NGO』. 3(1). 29-54.

정태욱. 2002.『정치와 법치』. 책세상.

플라톤. 박종현 역. 2008.『국가・正體』. 서광사.

www.kci.go.kr

피에르&페터스. 정용덕 외 역. 2003.『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서울: 법문사.

황태연. 2010.『공자와 세계: 패치워크문명 시대의 공맹 정치철학』. 미간행초고 (2011년 1월 출간예정).

Benhabib, S. eds. 1996. *Democracy and Difference.* Prinstons Univ. Press.

Bessette, Joseph M. 1980. "Deliberative Democracy :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 In R. A. Goldwin and W. A. Schambra (eds.) *How Democratic is the Constitution?* Washington: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02-116.

Blaug, R. 1996. "New theories of discursive democracy: A user's guide." *Philosophy&Social Criticism*. 22(1). 49-80.

Bohman, J. and Regh, W. (eds.) 1997. *Deliberative Democracy: Essays on Reason and Politics*. Cambridge: MIT Press.

Cohen, J. 1989.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Alan Hamlin and Philip Petit, *The Good Polity*. London: Blackwell. 17-34.

Cohen, J. 1996. "Procedure and Substance in Deliberative Democracy." in Seyla Benhabib (eds.) *Democracy and Difference*. 1996. Princeton Univ. Press. 95-119.

Dryzek, J. S. 1990. *Discursive Democracy*. Cambridge Univ. Press.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Oxford Univ. Press.

Elster, J. (eds.)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Fung, A & Wright, Erik Olin (ed.) 2003.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Verso: London, New York.

Greiff, P. D.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group representa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26(3). 397-415.

Gutmann, A. & Thompson, D.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Habermas, J. 1975. *Legitimation Crisis*. Beacon Press.

Habermas, J. 1984.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A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www.kci.go.kr

Hume, D. 2006. edited by Kund Haakonssen, *Political Essays*. Cambridge Univ. Press.

Joshua Cohen. 1989. "Deliberation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Alan Hamilton and Philip Pettit (eds.) *The Good Polity: Normative Analysis of the State*. London: Blackwell. 17-34.

Macedo, S. (eds.) 1999. *Deliberative Politics*. Oxford Univ. Press.

Macpherson, C. B. 1977. *Life and Times of Liberal Democracy*. Oxford Univ. Press.

Manin, B. 1987. translated by Stein, E. & Mansbridge, J. "On Legitimacy and Political Deliberation." *Political Theory*. 15(3), August. 338-368.

Manin, B. 1997. *The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Cambridge Univ. Press.

Pateman, C. 1970. *Participatory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Univ. Press.

Rawls, J. 1971.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 Press.

Rousseau, J. J. 1968. translated by Maurice Cranston. *The Social Contract*. Penguin Books.

Schumpeter, J. A. 1994.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New York: Routledge.

Weber, M. 1968. translated by Parsons. T. *Economy and Society*. 1, 2, 3 vols. New York : Bedminster Press.

Weber, M. 1977. translated by Gerth, H. H. & Mills, C. Wright.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Henley and Boston.

Young, I. 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한국일보」2009. 11. 2.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Deliberative Democracy

-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identity -

Young-Jae Yi

From the ancient Athens to the present, we understand the concept of democracy as a compound word of Demos and Kratia. The domination of the people have been stood as a symbol for the democracy. However, we observed that its value is faced with a fixed dilemma in the political life. In order to restore democratic legitimacy, this study depends on the deliberative democracy. This work is trying to overcome the limit of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at the same time, to restore the principle of identity.

The deliberative democracy based on the 'deliberative politics' differs from not only the domination of elite, but also the Schumitt's political viewpoint which is classification of friend and enemy. The deliberative democracy produces democratic potential through the deliberative model based on the mutual understanding, participation and openness.

Key words : deliberation, democracy,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the principle of identity, legitimacy.

www.kci.go.kr

www.kci.go.kr